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감사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및 각 호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1항의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본 세칙에서 "회계 담당자"란 피감기관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본 세칙에서 "회계 책임자"란 회계 담당자 중에서 제22조제3항의 회계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임시위원)

1.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수가 4인 미만이어서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
3. 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4.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의2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사위원은 임기 중 피감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